

◆ 政府 施策 ◆

首都圏 공장 新增設 · 移轉 緩和

— 상공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立法예고 —

수도권에 대한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 완화된다. 또 도시형 업종을 현재의 191개 업종에서 334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종명시방법도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 신설되는 업종이 신속하게 도시형 업종에 편입될 수 있게 한다.

상공자원부는 수도권내 공업배치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월중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맞춰 기존 5개 수도권 권역을 자연보호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또 공장의 신증설 허용범위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매년 신·증설할 수 있는 공장건축 면적의 총허용량을 정하는 공장입지의 총량만을 관리하고 이 법의 시행령은 총량범위내에서 공장의 신·증설 허용범위를 규정키로 함에 따라 종래의 권역간 비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확실적인 법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과밀억제지역내에서는 인구 및 산업집중 예방차원에서 공장입지를 계속 억제한다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여 대기업 공장에 대한 신·증설은 계속 억제하되 중소기업 공장은 일정규모 범위내에서 신·증설을 허용, 그동안 양산돼 온 무등록공장들이 제도권 내에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자연보전지역에서는 한강수계보전 문제를 고려,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현행 정책을 고수하되 생활근린업종이나 공해발생 정도가 낮은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만 공장설립을 허용토록 했다.

그동안 입지규제가 심해 낙후돼 있는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등에 대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범위를 완화, 중소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이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관리 지역내에서 첨단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기존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내에서 일부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공장이전 문제에서도 종전에는 의류 제조업등 일부업종의 이전과 공업단지로의 이전만 허용하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전을 현지공장의 신설로 간주, 사실상 이전을 금지했으나 동일권역이나 동일지역내에서는 중소기업의 이전을 허용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동일지역 이전과 관련 비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공장면적 2배 범위내에서 이전을 허용하고 도시형 업종공장의 비공업지역 상호간 이전과 공업지역 상호간 이전도 허용한다.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진은 중소기업의 경우 모두 허용하고 대기업은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허용한다.

업종변경에서는 종전의 경우 신·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으로만 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해발생이 적은 도시형 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을 허용하며 제조공정상 필요한 경우 업종의 추가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신·증설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 했으며 공장건축 면적의 계산에 있어서도 사무실 면적을 제외토록 하고 창고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도시형 업종을 현행 191개에서 334개 업종으로 확대해 143개 업종을 추가하고자 명시방법을 비도시형 업종만 규정하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도시형 업종의 재조정에는 지난 85년 조정된 현행 규정이 산업구조 변화 및 소비행태 다양화등 공업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업종선정에 있어서도 여자 기성복 제조업은 도시형업종인데 반해 관련업종인 남성 기성복 제조업은 비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비도시형 업종의 경우 공장입지상의 불이익은 물론 건축법, 지방세법등에 의한 불이익까지 받게돼 그동안 연간 150건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발표된 첨단업종의 범위조정과 기준공장면적을 조정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신·증설이 일부 허용됨으로써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조건부 및 무등록상태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많은 공장들이 현지에서 적법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게 돼 무등록공장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동안 공장증설 제한으로 시장확대, 신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시설 확충이 어려워 제2공장을 신설해야 하는등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돼왔으나 이러한 규제요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신·증설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타지역으로 부터의 공장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성장이 낙후돼왔던 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재배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尖端技術산업 10년간 우선 育成

— 商工部, 年末까지 첨단기술산업 발전비전 수립키로 —

정부는 향후 10년간에 걸쳐 우선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첨단기술 산업분야를 선정, 우리산업이 당면한 기술 및 정책과제, 주요 산업별 대응방안, 발전전략등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비전을 수립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첨단기술산업 발전비전 수립을 위한 총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마련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를 위해 총괄위원회 산하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반도체·LCD, 메카트로닉스, 자동차, 항공기, 광산업, 신소재, 생물산업, 생활산업 등 9개분야 분과위원회를 설치, 향후 과제를 연구토록 하는 한편 산업연구원(KIET)내에 사무국을 두고 실무연구작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9개 분야별 분과위는 국제경쟁 및 무역환경의 변화, 주요기술의 변화, 국제경쟁 우위구조 변화등 2천년대 세계 산업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첨단산업이 세계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분야별 수급전망, 2천년 및 2005년의 발전비전등 우리산업의 현황 및 발전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 산업별로 기술·투자·인력·국제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중점추진과제·우선육성업종등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전략과 기업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방향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첨단산업별 세계수급 구조전망, 국제경쟁 구조변화등 산업환경에 대한 전망은 미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DRI에 위탁연구를 의뢰한다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금년말 연구결과가 확정되면 금년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될 공업발전법상의 장기산업발전방향에 반영, 고시하고 산업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본지침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이 연구결과로 발굴된 개별과제들을 조기 해결토록 노력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산업은 현재 세계무역 비중이 20% 내외를 점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21세기에는 60%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시장은 연평균 10%, 국내시장은 연평균 20%의 신장이 예상되고 있다.

첨단기술산업은 기술혁신을 선도할 뿐아니라 제재산업의 신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등을 촉발하는 등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커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산업으로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1種 전기공사업체 受給한도액 확정 - 商工部, 올 총수급한도 7.4조...100억이상 140業體 -

상공자원부는 1663개의 제1종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94년도 업체별 전기공사 수급한도액과 순위를 확정, 공고했다.

전기공사 수급한도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상한금액으로 한도액 산정은 2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산정했으며 1년이상 2년미만의 업체는 93년 실적에 자본금을 더한 금액으로, 1년미만의 업체는 자본금을 수급한도액으로 책정했다.

이날 공고에 따르면 올해 전기공사 총수급한도액은 전년도보다 15.2% 증가한 7조4308억원이며 업체당 평균 수급한도액도 15.2%가 증가한 44억7천만원을 나타냈다.

또 수급한도액 규모별 업체분포는 100억원 이상이 140개 업체이며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업체는 179개 업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업체는 1093개 업체, 10억원 미만업체가 251개 업체로 분포됐다.

업체별 수급한도액 순위는 현대건설이 2877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고 삼성종합건설이 1042억원으로 지난해7위에서 2위로 올라섰으며 지난해 8위였던 럭키개발은 862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또 10위권 내의 업체는 종합전기, 남양계전, 대림산업, 동아건설, 대우, 쌍용건설, 한양 등이며 한 국중공업, 선경건설, 신안전기, 우성건설, 롯데건설 등 5개업체는 금년에 새로이 20위권내에 진입했다.

지난해 제1종 공사업체의 전기공사 실적은 GNP의 1.46% 수준인 3조8409억원으로 전년대비 7%가 증가했으며 업체당 평균 공사실적도 전년대비 7% 증가한 23억원으로 1억5천만원이 늘어났다.

優秀 디자인상품 선정제 대상 품목 擴大

— 商工部, 올 전시회 7월 1일 개최...신청접수 6월 13~14일 —

정부는 우수디자인 상품의 개발 촉진을 위해 개최하는 '94 우수디자인(GD) 상품선정제를 오는 7월 1일 개최키로 하고 올해부터는 참가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지난 8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우수디자인 선정제는 국내에서 유통 생산되고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상품의 외관, 기능, 안정성 및 품질기준등을 심사해 우수디자인(GD)을 선정하고 우수디자인 상품표시(GD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공자원부는 우수디자인 선정제가 우리 업계의 산업디자인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 선정대상 품목에 산업기계·운송기기등 수출유망품목을 추가, 총 181개 품목으로 늘림으로써 기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또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종전에 부여했던 GD마크 사용등의 특진외에 금년부터 상공자원부 장관 상 이상의 수상업체에 대해 제품디자인개발을 위한 공업발전기금 지원시 우대하고, 각종 국제전시회 참여시 우선 추천하는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선정상품의 홍보를 위해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과 주요 도시에서 순회전시회를 갖고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장상 이상의 상을 수상한 상품의 디자이너는 동 개발원이 시행하는 해외연수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기관 및 각 단체의 물품구입시 GD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고 상공자원부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유망선진기술기업 선정시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디자인 상품의 카탈로그를 제작해 국내외에 배포키로 했다.

이밖에 우수디자인 상품업체가 관련상품을 광고하고자 할 때는 금년말까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이 협찬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혜택도 제공기로 했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KIDP)이 주관하는 이 행사의 참여대상은 전기·전자, 주택설비 및 가구, 레포츠·의료기기 및 일용품, 사무기기 및 문구, 완구·아동용구 및 교육용품, 산업기계 및 운송기기 등 6개부문 181개 품목이다.

동 개발원은 참가업체의 응모신청을 오는 6월 13~14일 양일간 접수하고 3단계의 심사절차를 거쳐 우수디자인 대상(대통령상) 1점, 우수디자인상(국무총리상) 1점, 부문별 우수디자인상(상공자원부장관상) 6점, 한국고유조형상 1점, 환경디자인상 1점, 장려상등을 선정한다.

병역특례업체중 무등록 공장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 商工部, 병역특례 신청시 공장등록증 사본제출 의무화 -

상공자원부는 지난 3월 15일 병역특례심의(기능별) 위원회를 열고 무등록 공장에 대한 신규지정업체의 선정 및 기존 지정업체중 공업배치법상 공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등 관련 법령 준수를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산업기능 요원 배정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기존 지정업체중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조건부 등록업체 포함)에 대하여는 익년도 산업기능요원 채용인원의 배정을 제한하고 공장등록을 하였을 때 그 인원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94년도 신규지정업체 선정원서를 제출할 때나 기존 지정업체에 대한 1995년도 소요인원 통보시에는 공장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조치는 '94년도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함에 있어 국가가 지원 육성할 기간산업체는 그 산업의 중요성 못지 않게 그 산업의 입지가 국토이용계획, 환경보전 등 다른 국가정책 목표와도 부합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 아닌 곳(무허가 건물등)에 조업중이거나 그 규모가 영세하여 공업배치법상 공장으로 등록할 수 없는 등 관련법령 준수를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産業用 電力 수요 큰 폭 增加 - 1分期 사용량 11.6%나...景氣 회복 가동률 提高 -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산업생산 증가와 함께 제조업 가동률이 재고되면서 산업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올 1·4분기중 산업용 전력사용량이 210억5500만Kwh로 전년동기비 11.6%가 증가, 전년동기의 증가율 6.6%를 크게 상회했다.

이처럼 산업용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1·4분기중 산업생산이 10.1%나 증가한 데다 제조업 가동률도 지난 1~2월중 82%에 달해 작년 1·4분기의 78%보다 크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용 전력수요는 특히 최근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전자·기계·자동차산업등에서 소비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월중 업종별 전력수요를 보면 전기기계 분야가 22.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자동차가 20%, 조립금속이 18.7%, 섬유가 11.5%, 1차금속이 10.2%의 증가율을 각각 나타냈다. 그러나 석유정제분야는 전력소비가 오히려 전년동기비 2% 감소했다.

지난 1·4분기중 전체 전력수요는 342억5천만Kwh로 전년동기비 13.1%가 증가했으며 최대 수요도 2210만2천Kw로 13.1%가 증가해 지난 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1·4분기중 이같은 전력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월 10% 이상의 공급예비율을 확보, 안정적인 수급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자원부는 올들어 전력수요가 당초 예상치를 훨씬 상회함에 따라 현재 건설중인 발전소의 적기 준공등 전력공급능력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수요 증가현상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수요관리대책을 시행, 올 여름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처키로 했다.

단체 標準 97년까지 先進國 수준으로 - 工振廳, UR이후 貿易障壁가능성 커 기술지도 적극추진 -

공진청은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단체표준을 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다.

공진청에 따르면 UR타결이후 단체표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정부는 단체 표준의 제정능력 배양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교육·연수등을 통한 단체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전문인력의 확충등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단체표준의 질적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선진국의 규격관련 단체와도 업무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표준의 전문가 육성을 위해 표준협회내에 정기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단체표준 자체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한국산업표준원·표준협회에서 기술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체표준화 실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 단체표준의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단체표준은 생산자단체가 생산업체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표준을 제정, 제품 생산의 효율성 및 부품의 호환성을 제고시키며 나아가 해외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일본이 194개 단체에서 4천721종을, 미국이 580여개 단체에서 10만여종을 제정해 놓고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43개단체에서 619종에 불과, 아직 초보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KS획득 工產品 안전檢査 면제

— 工振廳, 品質경영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立法豫告 —

공진청은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중 KS표시허가를 받았거나 특별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검사등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며 안전검사대상 공산품도 현행 54개품목에서 50개품목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품질경영 우수 포상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인증기관을 지정할때는 한국산업규격 KSC 5616의 중분류 코드에 의한 인증업무 수행범위를 정하여 지정토록 했다.

공진청은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및 안전검사제도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하는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르면 공진청장은 품질경영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기업·단체등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실태조사 실시 7일전까지 조사사항·조사 일정등을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다.

또한 품질경영우수업체로 포상을 받은 기업, 분임반, 품질명장에 대한 각종지원을 관계행정기관, 관련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품질경영우수기업에 대한 포상은 한국품질대상, 품질경영상 및 부문상으로, 우수분임반은 금상·은상·동상 그리고 우수 근로자는 품질명장으로 정하고 공진청장은 포상의 종류별로 포상기준·선정방법 및 절차등을 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고토록 돼있다.

안전검사대상공산품중에서 KS표시허가를 받았거나 특별법에 의한 형식승인 또는 검사등을 받은 제품이 안전검사항목과 일치되는 검사를 거친 경우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진청장이 면제대상공산품명, 면제의 범위등 세부내용을 고시토록했다.

이밖에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은 현행 54개품목중 싹통, 짚는식 섬머베드, 합성수지계 도마 및 칸손잡이, 등산용 버너 등 4개 품목을 삭제, 50개품목으로 조정했다.

한편 공진청은 품질경영체제의 조기도입 및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품질표시제도·품질검사제도·품질관리등급 사정제도등 규제 일변도의 공산품 품질관리법을 품질경영도입촉진제도, 품질보증체제인증제도, 안전검사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 촉진법으로 개정한 바 있다.

▲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신·구 대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1. 공산품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신 설)	1. 품질경영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품질경영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제명변경
2. 품질관리진단 ○ 직권진단 ○ 신청에 의한 진단	3. 품질경영진단 ○ (삭 제)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3. 품질관리등급사정제도 (신 설) (신 설)	(삭 제) 4.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 ○인증기관지정 및 인증업무 관리·감독 ○연수기관 지정 및 연수업무 관리·감독 5. 품질경영 우수기업, 분업반 및 개인의 포상 ○포상의 종류를 정하고 공업 진흥청장이 포상계획을 공고 하고 관계 행정기관등에 지원 요청 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용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였음. · 국제통용 품질보증 체제 인증제도 (ISO 9000시리즈)입
4. 품질표시제도 5. 품질검사제도 ○품질검사기관 지정·관리 ○품질검사기준 제·개정 (신 설)	6. (좌 동) 7. 안전검사제도 ○안전검사기관 지정·관리 ○안전검사기준 제·개정 8. 안전검정제도 ○민간자율적 안전검사체제 구축	수입품에 대한 품질검사가 수입규제로 오해받을 소지 없애고 품질문제는 기업스 스로 관리토록 함. 안전관련 검정사항이므로 공진청의 승인언어 시행 토록 함.

KS제품 業體 특별事後管理

- 工振廳, 電線類 등 64개 품목 439개 공장대상 -

공진청은 최근 3년간 불량률이 높은 KS제품중 수도꼭지·레미콘·진압조정기·전선류 등 64개 품목 439개 공장을 대상으로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KS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다른 품목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생산제품에 대하여만 KS제품 시험을 함에따라 품질불량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특별 공장검사 및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KS제품 특별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불합격된 업체에 대하여는 KS표시허가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KS에 대한 관리능력이 없거나 규격미달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진청은 이에앞서 지난 2월중 보일러등 31개 품목에 대해 전국 587개 공장제품을 수거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전자재·전기제품등에 대하여는 이달중 추가로 대상품목을 선정, 공진청과 시도요원 합동으로 연말까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KS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特許애로 相談센터 設置

— 특허청, 행정불만해소대책협의회 구성도 —

특허청은 청내에 ‘특허애로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동시 폭넓은 對民서비스 강화를 위해 청장을 위 원장으로 하는 특허행정 불만해소 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대책협의회는 특허청장을 위원장으로 △발명특허협회·대한변리사회·아세아변리사회·국제발명 메달리스트협회(이상 부회장)·한국여성발명가협(사무국장회) 등 關連團體와 △삼성전자·현대자동차·동양산업·건양콘크리트 등 業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럭키중앙연구소·연세대 특허법무대학원등 연구소 및 학계 △특허청 각국 국장급등 19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허청은 앞으로 설문조사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동시 전문가 의견과 여론수렴함에 접수된 의견들을 토대로 민간의 불만사항을 발굴, 해소하고 설명회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심사기간 단축과 특허정보 제공을 통한 중복연구를 막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특허행정진산화 7개년계획’을 ‘특허정보화 2000으로 改稱’ 그 완료시기를 앞당기는 동시 내용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처럼 특허청이 ‘對民서비스 강화’에 적극 나선 것은 UR타결등 선진국의 知財權 보호압력과 기술의 복잡·다양화등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및 불만성 민원해소를 위해 產·學·研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체 출원건수중 평균 46%만 등록되는데 따른 불만성 민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